

## UN 이주노동자 규약 비준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박 천웅 목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소장)

1998년은 유엔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12월18일은 1990년 제69차 UN 정기총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권리보호를 위한 조약'이 채택된지 8년이 된 해이고 국제연대의 날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는 첫해이기도 하다. UN 비준을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해해 나가야 한다.

ILO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에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0억의 사람들 가운데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업, 불완전고용, 난민 및 이주 노동자의 상태로 있다. 이 가운데 1억 2천명 이상이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적 이주와 관련한 국가들의 통계는 안타깝게도 드물어서 적절한 절차 없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타내지 못하거나 한다고 해도 정확한 통계는 되지 못한다. 국제적 이주의 수량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통계를 보면, 아프리카 6-20,000,000, 아시아 6-9,000,000, 유럽 (구 소련과 전 유고연방은 제외) 20,000,000, 북아메리카 15-17,000,000 남/중앙 아메리카 7-12,000,000, 서아시아 (아랍 국가들) 6-7,000,000 등을 합하여 7천만- 8천5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8년 초를 기점으로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UNHCR)은 1억 3천만명의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ILO와 UNHCR이 언급한 수치들은 다른 국외 거주자를 나타내는 범주들과 함께 세계 인구 50명중 거의 한 명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은 모든 이주민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왜 한국정부는 UN안에 비준 해야하는가?

### 1)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스트레스 많은 나라 한국

홍콩의 두뇌집단인 정치경제위험상담소가 아시아의 각 나라에서 일하고 귀국한 아시아인 600명을 대상으로 각국의 '노동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0점을 기준으로 한국은 7.9를 기록해 베트남 8.0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이 7.9가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로 지목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주 노동자를 받는 나라중에서는 아시아에서 1위인 나라이다. 국내에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간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참조 ) 베트남 8.0, 한국 7.9, 인도네시아 7.8, 타이 7.4, 중국 7.3, 인도 7.0,  
말레이시아 6.6, 싱가포르 6.1, 일본 5.9, 필리핀 5.8, 대만 4.5

### 2) 이주 노동자 정책에 혼란만 많은 나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된 것은 1991년 10월26일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무부훈령 제255호) 및 그 시행 세칙을 발표하여 1991년 11월1일부터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주로 해외진출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상공부 장관이 추천하는 업체에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1992년부터 현지법인 연수생과는 상관없이 변칙적으로 3D업종에 단순노동을 하게 되었다. 1992년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산업 기술 연수생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것이 1993년 11월24일 외국인 산업연수 조정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연수생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추천기관으로 인정하고 94년부터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이 설치되어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운영하였다. 한편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정부의 공식 대응은 1992년 6월에 공식적으로 정리되어 6월10일부터 7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하였다.

1995년 2월3일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표명한 이래 정부 내외에서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

었다. 그러던 지난 1997년 9월9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기술 연수제를 절충한 연수취업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1997년 12월13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434호)과 1998년 4월1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764호) 및 법무부령의 연이은 개정으로 현실화 되었다.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차관을 위원으로하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 위원회'를 성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는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에서 핵심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업무의 통일성이나 역할분담 및 정책의 일관성 및 이해 관계에 따른 혼선만 노출 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의 이주노동자정책의 기준을 UN 규약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IMF로 쫓겨나고, 부르커에게 갈취당하는 이주 노동자  
94년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 98년 8월 말까지 연수 계약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포기 당한 산업기술연수생은 4,371개 업체 13,061명에 이르고 있으며, IMF 체제의 여파로 98년에 들어 2,838개 업체 8,286명으로 94년 이후 전체 포기연수생의 63%에 이르고 있다. 포기연수생의 경우, 연수업체의 도산, 경영 악화의 사유로 연수생의 활용을 포기한 경우는 연수생의 타 연수업체로의 근무처변경 희망 의사 및 잔여연수 기간을 감안하여 타 연수업체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출국조치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IMF 체제 이후 98년 이후 98년도에 포기인원 8,286명중 타 연수업체로 근무처를 변경한 연수생은 6,948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94년 이후 포기연수생의 강제 출국 조처당한 연수생은 총 1,430명이며 94년 없으며, 95년 16명, 96년 137명, 97년 155명 하던 것이 98년에는 1,122명이 강제출국 조치 당하고 있다. 정부는 98년 들어 신규 연수생 도입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연수생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APEC국제 민중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방

곡에서 한국으로 일하기 위해 비행기로 기다리던 신규 연수생을 만났다. 총 11명중 10명중 만났다. 이들은 송출업체 UNIQUE ESTRN의 소개로 왔으나 실상은 다카공항에서 3km 떨어진 인력회사 Kacrail이라는 곳을 통하여 왔으며 4438의 경우 Mohamad Hossein 4457의 경우 Mohamad Edus란 사람의 중간책이 있었고, Selim이라는 사람이 송출책임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300,000 Daka(8,437,500원)를 주고 왔으나 외적으로는 80,000Daka (2,500,000원)를 주고 왔다고 말을 하도록 교육도 받았다.(1\$=48 Daka) 이 가운데 4408의 라나는 인천 송일산업(032-828-3236)에서 한 달에 60 만원을 받고 일을 했으며 다시 나오는데 송일산업의 사장은 현재 미국에 가 있다고 소개했다.

98년 들어 8개월 동안 1,122명의 연수생을 계약의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들여오는 것은 송출업체에게 부당이득을 보장하고 연수생들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를 전가시키는 행태이다. 850여만원을 들여 한국에 온 연수생이 1년만 일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1달 40만원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1년 뒤 370만원을 고스란히 빚지고 돌아가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진다. 반출된 연수생의 숫자만큼 송출회사에서는 그 인원만큼 신규인원을 배정 받아 들여오기 때문에 결국 브로커의 부당이득만 생기게 되는 악순환의 재현이다.

연수번호	이 름	근 무 처	전 화
4438	Jahangir Alam	대홍화학	0346-584-8655
4408	Rana	대화수지	0341-84-5853
4455	Nazrul Isram	동양물산	032-577-4072
4456	Mohamad Isram	동양물산	"
4457	Htan Bebnath	동양물산	"
4462	Mohamad Abdul	봉진화학	032-544-8016
4461	Sheikh Abdul Kalan Azao	봉진화학	"
4441	Abdul Kader	대홍화학	0346-594-8655
4434	Monsur Rahaman	한일공업사	0354-542-0321
4436	K.M. Faruk Hasan	용암수지	0441-855-1648

#### 4) 제도적으로 방해하는 국제결혼 가정

정부는 지난 1998년 6월10일부터 신국적법을 적용하여 국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1998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구분하고 국내연고가 없는 중국조선족과 러시아 거주 동포는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과거국적주의'에 의거 국내에서 여전히 차별 아래 놓여있는 상황이다. 국내에는 수많은 국제결혼 가정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서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지난 98년 11월16일 아침 말레이시아에서 APEC 민중회의를 참여하고 돌아오는 아침 김포공항의 입국 심사대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였다. 어린아이 둘을 손에 잡은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남편과 함께 내국인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고 있었다. 이때 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저리가세요," 하는 것이었다. 가리킨 곳은 외국인들이 서는 줄이었다. 자세히 보면 한국인 여성의 남편이 외국인이었다. 남편이 외국인이니 전체 가족을 외국인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다가가 "아저씨 이분은 한국사람입니다. 이 아이들도 여기 설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 올 수 없나요 ?" 하고 문자 "국적 취득이 안되었으니 어렵습니다, 정 원한다면 따로따로 줄서세요" 했다. 이때 영문도 모르는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영문을 몰라 하였다. 아직도 국내에는 국제 결혼한 가정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 5) 점점 늘어만 가는 해외취업 한국인 인권 누가 보장하는가?

지난 12월 7일 5대 재벌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은 대량실업을 발생시키고 있다. 5대 재벌의 총 2백64개 계열사를 1백35개로 감축할 경우 총 58만2천여 고용인권중 20-30%, 최대 18만명이 고용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과 관련된 하청업체들의 휴,폐업까지 감안하면 실직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특히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 과정에서만도 하청업체를 포함하여 10만 여명이 실직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12월8일 민주노총에서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경제성장률에서만도 지난해 3/4분기 3.9%에서 올해는 -6.8%로 사상최악의 상태로 떨어졌다. 실업자의 수는 이미 5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5년 이후 98년 3월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측은 노동부, 외교통상부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해외취업 정보창구'로 활동하도록 결정하고, 8월 말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와 지역본부 등 5곳에 해외취업센터를 열어 본격적으로 해외취업 지원에 나섰다. 노동부는 해외취업이 취업난 해소와 외화획득 뿐 아니라 해외취업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는 물론 해외건설, 디자이너, 봉제, 간호사, 해외선원 등 분야의 해외취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미국 등 선진국에 1만 명 가량이 취업 가능할 것으로, 건설인력의 경우 앞으로 5,000여 명이 해외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99년에는 2만 여명을 해외취업을 시킬 계획으로 1인당 300만원의 지원예산을 통하여 어학연수 및 기숙사비조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	관련기관	취업가능인원	추진현황	비고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한국 S/W지원센터	10,000명	영어 등 기초적 교육 훈련 준비 중	2000년 문제 해결등
건설인력	해외건설협회	5,000명	모집공고로 2,800명 구직접수	정부보조필요
봉제	충청북도	1,000명	사이판 보세협회와 취업약정	금년도 500명 취업예정
기술연수(일본)	대한상공회의소	2,000명	일본 JITCO와 협의 예정	1년 연수 뒤 2년 취업
디자이너	디자인 진흥원	미정	수요조사 중	100-200명 예상
간호사	대한간호사협회	미정	해외 한인간호 사협회등 수요조사 중	소규모 예상
해외선원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업협회	3,000-4,000명	해외취업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중	6월 현재 7,000명 취업

아울러 지난 70년대 말, 80년대에 중단되었던 중동 불이 다시 불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의 건설기술자들이 중동으로 다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이미 지난 IMF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미주, 호주, 일본 등지로 빠져나가 이주노동자의 상태로 있으며 해외취업 사기 사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취업하여 해외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피해 사기사건 및 이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는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싶다. 해외 취업하는 한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은 사실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정부는 해외파견 한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서도 UN 이주민 협약에 비준해야 한다. 한국의 실업문제는 곧 이주 노동자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 2. UN 이주민 협약의 중요성

UN 이주민협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위주노동자와 그 가족 성원의 보호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새 지평을 열게 되었다는데 커라단 의의가 있다. 그것은 또한 단순히 현존하는 인권 법률을 특정 개인 범주에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여성 이주노동자와 남성 이주노동자, 합법적 노동자와 비합법적 이주노동자, 내, 외국인간에 인권을 대우의 평등조항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구상을 보여준다.

국제이주민권리감시위원회에서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협약의 중요성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협약은 이주 노동자들이 국제경제에서 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인정한다. 이것은 수백만 개인들과 무시될 수 없는 수많은 국가들에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아직 이주 노동자들은 국제사회에서 대개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남아있다.

2. 오늘날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종종 그 출신 국가로부터 무시당하며, 개개인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들이 외국인 신분인 고용국가에서는 제한된 권리를 지닌다. 이 협약은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 구성원들을, 국제적 상황하에서 인권보호가 필요하고 그들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러한 것을 즐길 권리를 부여받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규정한다. 그것은 인권 법을 현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정부류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조항들은 인권보호조치를 약자의 위치에 놓인 다른 이주자들에게도 확대할 것이다.

3. 이 협약을 이주노동자에 관한 지금까지의 문서 중 가장 포괄적인 국제 협약이다. 그것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 복지, 권리 그리고 관계국가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일련의 국제 규범을 제시한다. 관련 국가들에는 국제적 노동자의 이주로 인해 이득을 보

는 송출국, 경유국, 수입국이 모두 포함된다. 상무간, 지역간 조약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국제적 사안을 다루기에는 불충분하다.

4. 국제 사회는 처음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이주자로 인정하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적 정의를 내렸다. 이 협약은 또한 세계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대한 정의도 내리고 있다.

5.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나 경제적 실체 이상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가족이 있는 사회적 실체이다. 따라서 이 협약은 그들이 가족 재상봉의 포함한 권리들을 가짐을 인정한다.

6. 협약은 모든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적이거나 불법적 이민 상황에 있건 간에 기본적인 인권을 부여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것은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지만 합법적이고 인정된 지위를 가져야 함을 장려한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가 관련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를 것을 장려한다.

7. 협약은 또한 고용국에서 외국인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어떤 상황하에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다뤄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대우의 평등"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국적과 국경에 상관없는 인권의 불가분 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국적자는 그러나 내국인보다 많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

8. 그것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시민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는 국가들이 특정지역에서는 부가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인권보호에 관한 국내적 기준이 업는 나라들에게 그 입법을 협약에 규정된 보편적 기준에 근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국은 그 영토 내로 어떤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그 거주기간은 얼마나 할 것인가에 있어 자율권을 지닌다.

9. 대체적으로 협약은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전 이주 과정을 통해서 착취당하는 것을 없애고 예방하는 것을 추구한다. 특히, 그것은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나 비밀리에 모집하고 밀수입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불법적이고 밀입국상태에서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 마지막으로 협약은 그의 수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국제 사회-주로 NGO와 개인들-로부터 중대한 참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3. 국제인권 규약의 한국 비준 현황과 비준 절차

#### 1) 국제인권 규약의 한국비준 현황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는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기준을 재확인, 확대하였는데, 그것은 다양한 문서들에 열거된 권리들이 모든 이에게 어디에서나 적용되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와 분리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 단언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80여 가지가 넘는 인권관련 국제조약 가운데에서도 특히 일곱 개의 주요문서를 '비준과 실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조약'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것은 'UN인권선언'과 더불어 '인권에 관한 국제헌장'이라고 불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조약',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비하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어린이 권리 조약' 그리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상의 핵심 7개 인권 규약 중 '이주노동자 권리호보 조약'만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 주요 인권조약 한국비준 현황

번호	조약 이름	채택일	발효일	한국 비준일	당사국수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12.16	1976.1.3	1990.4.10	133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12.16	1976.3.23	1990.4.10	132
3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966.12.16	1976.3.23	1990.4.10	87
4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제 2 선택의정서	1989.12.15	1991.7.11	-	29
5	학살 범죄에 대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1948.12. 9	1951.1.12	1950.10.14	117
6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	1951. 7.28	1954.4.22	1992.12.3	125
7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1.31	1967.10.4	1992.12.3	122
8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4.9.28	1960.6.6	1978.8.22	42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65.12.21	1969.1.4	1978.8.8	150
	인종차별적 범죄 금지와 제재에 관한 협약	1973.11.30	1976.7.18	-	89
1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조약	1979.12.18	1981.9.3	1984.12.17	151
12	고문 및 기타 잔악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비하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반대하는 조약	1984.12.10	1987.6.26	1995. 1. 9	93
13	운동경기상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조약	1985.12.10	1988.4.3	-	58
14	어린이 권리 조약	1989.11.20	1990.9.2	1991.11.20	190
1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	1990.12.18	미발효	-	9(1997년 현재)

## 2) 비준절차와 국내 인권기준 제고에 미치는 효력

### 가. 비준절차

국제 협약은 입안 그룹의 합의에 기초하여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나 동의에 의한 채택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 조약은 1990년 12월 18일, 제 69차 국제연합 정기총회에서 정식적인 국제 규범으로 채택되었다.

#### 1) 1단계 : 국제협약으로서의 채택

- ① 입안작업
- ② 입안 그룹이 합의 안에 동의
- ③ 총회에 제출하여 표결 및 동의로 총회에서 채택
  - 일반적으로 입안하는 안에 반대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

#### 2) 2단계 : 서명을 통한 국제문제로서의 효력화 절차

- ① 국제문서로의 효력-UN 가입국 중 20개국의 동의 서명
- ② 가입절차 (가) 2개의 공식단계 - 동의서명, 가입 - 행정부
  - (나) 한번의 절차 - 비준

한 국가는 조약에 공식적으로 동의함으로써 그 규범에 책임을 지고 그 내용을 결합시킬 것을 약속하게 된다. 그러한 동의는 두 개의 공식 단계나 모두 한번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국가는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이것은 대개 정부의 행정부가 맡게 된다. 조약의 비준은 대개 사법부나 법률 제정 부서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협약의 비준은 조약 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국내법으로 채택하겠다는 계약이다. 필요하다면 정부는 국내법이 조약에 조응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조치들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는 예비적 서명을 거치지 않고 조약을 채택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함으로써 곧바로 조약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러한 비준과 가입을 통해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당사국이 된다. 규범들의 국내법적 수용은 국제 인권 조약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그것은 국내법과 정책들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기준들을 세운다. 그것은 국내법들이 정교화 할 수 있는 잘 갖춰진 규범들과 정의, 심지어는 세세한 법적 용어까지 제공함으로써 각국이 그들의 국내법과 사법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조한다.

#### 나.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기

조약은 대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고 작동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준, 혹은 가입국가가 필요하다. 이 최소수자는 대개 조약 자체에 정해져 있다. 그것은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의 경우에는 20개 국가가 최소로 필요하다.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것은 조약 비준국가나 가입국가를 구속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는 폐로 조약에 비준한 다른 당사국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조약당사국에 반하는 공식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이주민 규약에는 9개국만이 비준 혹은 가입하였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케이프버드, 콜롬비아, 이집트, 모로코, 필리핀, 시셀스, 스리랑카, 우간다)

#### 다. 감시

대부분의 주요 조약들에는 그 이행을 검토하고 수행을 감시하며 조약의 조항들에 관한 불만을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기구(treaty bodies)"나 위원회들이 있다. 이 위원회들은 조약 당사국들이 지명한 사람들 중에서 임명된다. 대부분의 조약기구들은 UN 사무총장을 통해서 매년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있다.

몇몇 조약들은 또한 조약 규정들은 위반하는 당사국에 대해 공식적 고발을 할 수 있는 세부 절차들을 명시해 놓기도 한다. 조약 규범의 수행과 관련한 제소와 분쟁들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과정도 또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4. 이주민 규약 비준을 위한 국제흐름과 국내운동제안

#### 1) 이주민 규약 비준 캠페인 선포의 해 1998년

이주노동자 국제 규약을 초안한 곳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이주난민 위원회이다. 국제적으로 이주민규약 비준 캠페인을 추동하고 있는 조직은 지난 94년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때 결성된 '국제이주노동자 권리감시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98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 회기 중 본 조약의 국제적 효력발생을 위한 전 세계적 캠페인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이 캠페인은 그러므로 국제조약을 인식할 수 있는 국제적 및 전국적으로 조직된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 활동의 주요 목적은 많은 나라들이 조약의 비준 및 승인을 하도록 옹호하고, 국내법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이주민 규약 비준 캠페인을 위한 국제연대의 흐름

미국에서는 난민 및 이민권리 옹호자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이 운동을 추동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AMC를 중심으로 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 98년 11월 10-15일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PEC 국제민중회의(APPA : Asia Pacific People's Assembly)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는 곧 인권' (Migrant Right are Human Right)이라는 이슈로 전 아시아적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계속하여 일본에서는 11월에 UN 비준에 관한 교육 및 기독교 연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12월 15일-19일 귀환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중 필리핀내 각국 대사관 앞에서 UN 비준문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는 교육 및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12월 9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정부의 UN 이주민 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300인 촉구인단 이름으로 UN 비준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으며, 12월 18일 외교통상부에 의사전달을 위해 면담을 신청한 상태이다.

한편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에서는 12월 18일 100주년 기념관에 모여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국제연대의 날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입장표명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각 교단에서 12월 18일 주간을 이주노동자의 주간으로 설정하고, 12월 18일이 있는 주간을 이주 노동자주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하였고, 한편으로는 UN 이주민 조약에 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 3) UN 이주민 조약 비준을 위한 국내운동 제안

#### 1.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교육

협약의 비준을 구함에 있어서의 첫 번째 문제는 비준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의 지도자들과 실무자들조차도 협약의 존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 실체와 중요성에 대해 무지하다. 심지어 정부의 관계 부처에서도 전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가 우리의 현실이다. 그룹별로, 지역별로, 단체별로 지속적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 2. 연대의 형성

이주노동자문제는 단순하게 노동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시민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각계 각분야에 연결할 수 있는 단체와 연대하고, 이들단체에 UN 이주민 규약에 대해서 홍보하고 명의 연대가 아닌 실제적인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3. 지속적인 선전 홍보

이민자와 이주자 권리 조직들, 이민자 협회, 그리고 이민자와 일하는 기관, 노동조합, 노동협회, 고용자 조직, 여성 조직, 종교조직: 모든 종교와 종파, 성직자, 신도 협회, 제도화된 기구와 영역(분야), 학계대표와 이민자 학생단체, 법학도, 학생기구협회를 포함한 학생 조직, 인권 프로젝트 팀과 위원회를 포함한 인권조직 들, 시민단체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조직, 법적인 기구들,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정의 모임(단체): 몇몇 예로, 환경, 발전과 식량정책, 빈곤, 사회복지, 외교정책 등을 걱정하는 단체들이 중요한 지지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을 향하여 세미나 강좌, 포스타, 선전지, 안내책자, 기사제공 등을 통하여 끊임없는 선전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12월18일에 대한 상징성 부각

각 단체는 12월18일을 기준으로 이주노동자주간 혹은 이주노동자주일 등을 설정하고 단체별 특성에 맞게 예배나 미사 등의 종교적 행사 및 이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함으로서 UN 비준 문제를 전면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 5. 정부교섭 및 관계자 교육

국가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자료를 계획한다거나, 국회의원, 정부 관료들에게 사전 인지를 위한 홍보 및 교섭을 벌여나간다. 이주 노동자에 관한 협약 캠페인은 이주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고양시키는 주요 접근법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단지 하나가 아니며 해당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끝은 아니다. 이를 통하여 각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문제에 다시금 관심을 갖게해야 한다.

#### 6. 이주노동자 인권보고서 발간

국가 캠페인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강화하고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이주자 권리의 침해를 실제로 감시하고 서류화 즉 조고서를 만드는 일이다. 이는 국가 캠페인 위원회 내에 감시 팀을 만들도록 가능할 것이다.

#### 7. 국제적 네트워크와 지지

상호 연관된 이 세상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는 것과 같은 성공은 국제적 협력, 조정 그리고 지지에 달려있다. 국가적 캠페인이 발달할수록 다른 것들로부터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 지지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획득된다면 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주자의 권리 침해의 공개가 유엔 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럼 장에서 이뤄진다면 구제책을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